尹영장 집행 어떻게…“적법 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

공수처장 “경고공문 보냈다”…수색영장 ‘거부 조항 예외’ 명시
6일 이전 집행 방침…체포땐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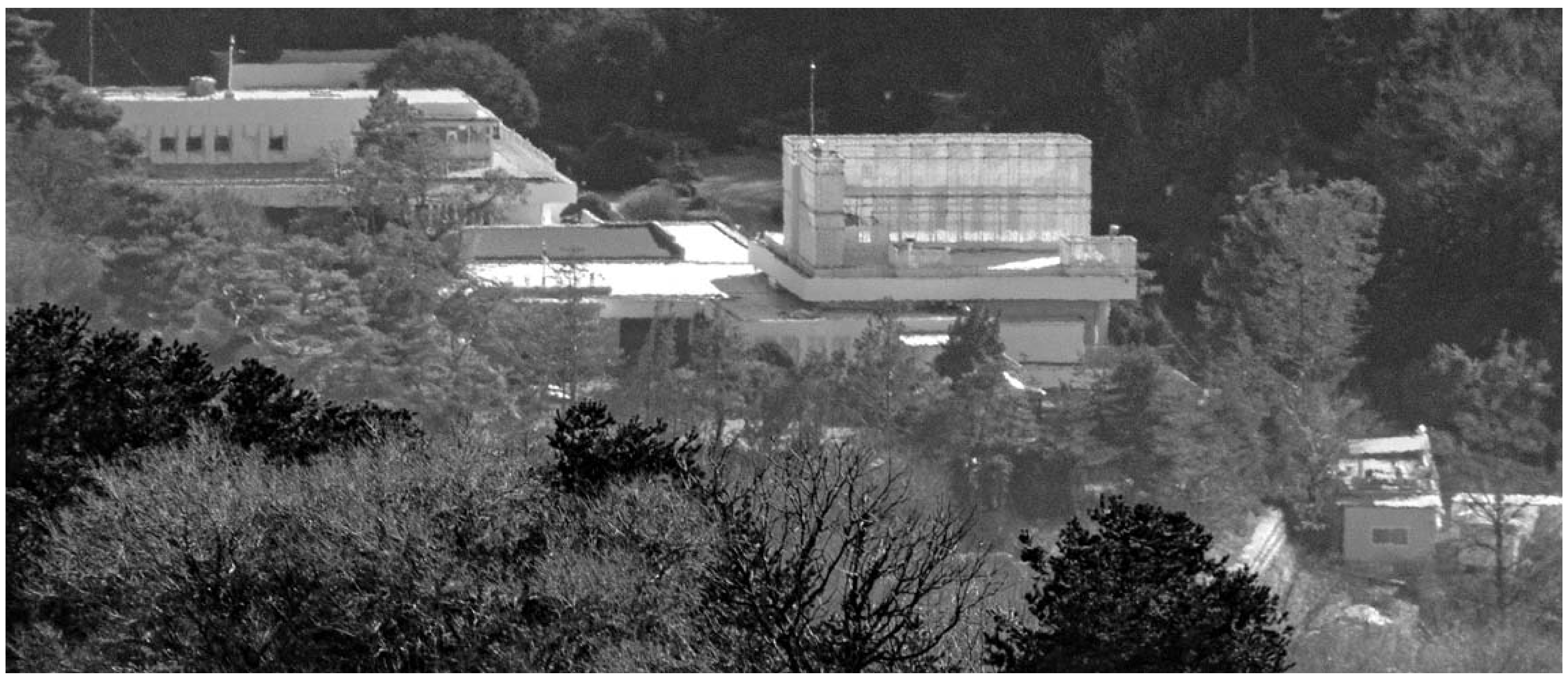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오 처장도 이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시킨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1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도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불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그럼에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국수본과 협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수사 사례에서 일과시간 외 영장 집행에 적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런 적법절차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다만, 오 처장이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야간 집행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호 관련 규정이나 운용 실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지만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당일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과 이재승 차장 중 누가 조사를 담당할지, 둘 다 나설지, 경찰이 입회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소명해 재청구하게 된다. 공수처는 재청구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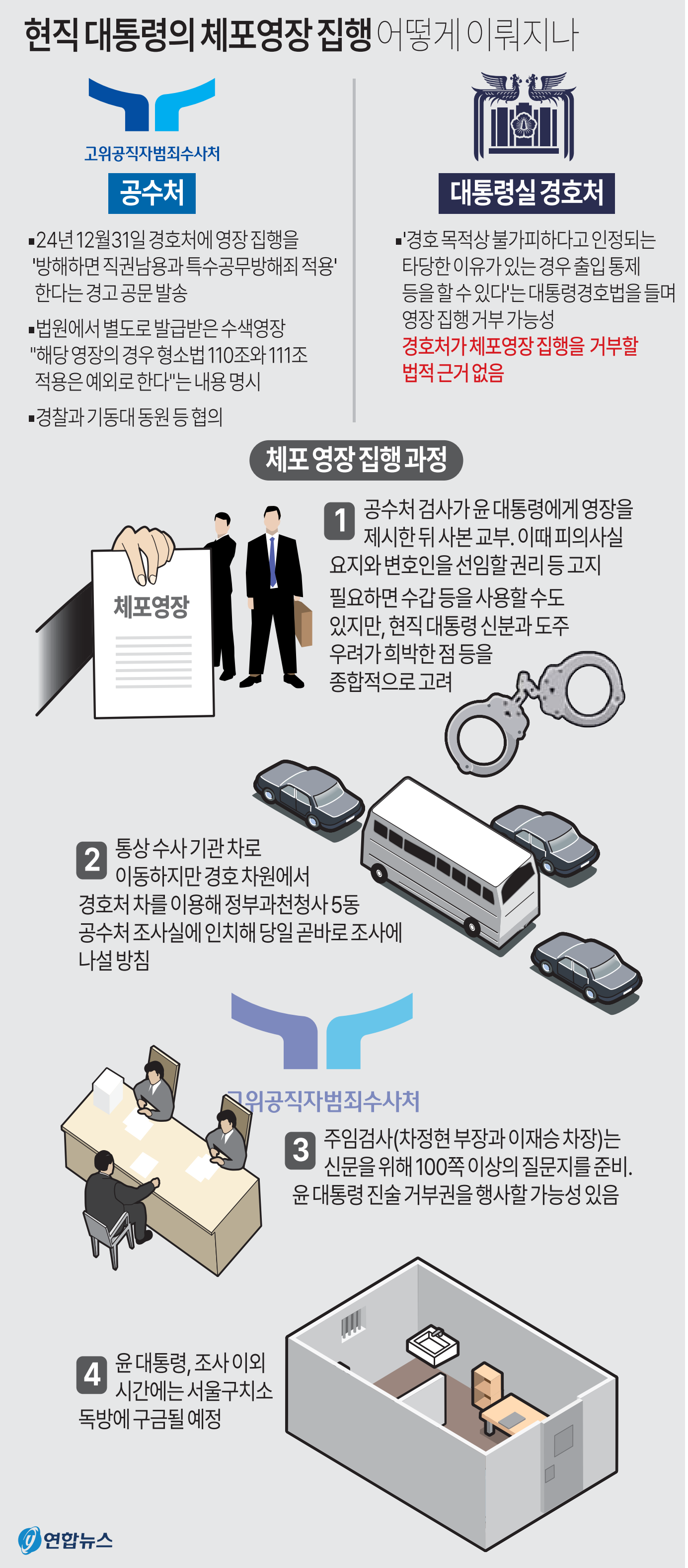

75일 만에 ‘8인 체제’ 된 헌재…尹·韓 탄핵심리 속도 낼 듯

정족수 모두 채워 절차적 정당성 확보…4월까지 ‘잰걸음’ 관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은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면서 헌재는 두 달 넘게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10월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규정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심리조차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헌재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리면서 헌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각하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를 미뤄왔다.

그 와중에 이달 들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등이 무더기로 들어왔다.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석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재로서는 결론을 미루기도, 무작정 서두르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는 한숨 돌리게 됐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한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도래할 다음 분기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이다.

두 사람의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로 원래 법률에 규정된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헌재가 오는 4월까지 가급적 주요 사건들을 모두 끝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현황 (24년 12월31일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사법연수원	18기	26기	19기	25기	17기	24기	27기	18기	29기
임기만료	2025년 4월	2025년 4월	2029년 4월	2029년 4월	2029년 12월	2030년 9월			임명보류
지명주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민주당)	국회(국민의힘)	국회(민주당)
성향분류	진보	진보	중도	중도·진보	보수	중도·보수	진보	보수	진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6일 국회 임명동의를 거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인 임명**

연합뉴스 자료: 헌법재판소

여야,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비판

與 “유감,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野 “3명 임명은 여야 합의 사항”
禹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야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제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선별해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자, 일부 국무위원이 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가지고 최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崔권한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연합뉴스

韓총리 탄핵·권한쟁의심판 주심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김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계획을 세우고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지냈고, 일선 법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연합뉴스